

정보화시대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의식 조사

Vidmar, Flaherty

이 글은 「Journal of Communication」 (Spring, 1985)에 실린 것으로, Neil Vidmar(웨스턴 온타리오대학 심리학과 교수)와 David H. Flaherty (웨스턴 온타리오대학 법학과 교수)가 온타리오주 교통 통신청의 후원으로 조사 연구한 "Concern for Personal Privacy in an Electronic Age"를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 주

I

북미인들과 유럽인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이용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전자장치의 개발로 인해 이제 정부기관과 기업체 혹은 개인까지도 대화내용을 쉽게 도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용 카메라, 우리의 업무를 구석구석 추적하는 직장의 모니터기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 뱅크는 이보다 훨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예로는 은행거래와 신용거래의 실적이라든지 복지카드의 발급과 실업자전표의 발급여부, 전화번호, 구매품목, 비행기여행 스케줄 등을 기록하고 있는 컴퓨터가 그것이다. 또한 교통위반 내용이라든지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서의 선호하는 프로, 의료기록까지도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다.1)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쇼핑, 은행거래까지도 집안에서 할 수 있고 또 오락물시청과 화재, 안전 또는 기타 건강까지도 감시·진단할 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와 쌍방 케이블 텔레비전(two-way interactive cable television)의 보급·이용은 이제 20 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현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2) 이로 인해 우리의 신상과 활동에 관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수집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 경찰당국의 감시능력은 이미 증대되어 왔고, 기업들은 직접우송구매 또는 전화구매를 하기 위해 고객에 관한 정보를 사고 팔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을 기획하며,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기 위한 리스트 등을 비치해둠으로써 청렴한 사람들마저 철저한 조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직장 안팎에서 피고용자들에 대한 감시의 강화는 근로자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은밀하게 고객들의 과거의 진찰기록을 비치해 두고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느 피고측 변호사는 고객들 중 누가 성인용 영화를 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케이블 텔레비전회사측에 기록물을 제시할 것을 청구한 예까지 있었다.3) 컴퓨터를 잘못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뱅크시스템의 안전성을 파괴할 가능성은 거의 매일매일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다.

프라이버시 및 자료보호법을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산업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북미에서는 전국적으로 또는 주단위로 데이터 보호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4)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데이터 조사위원회(Data Inspection Board)가 전국적으로 데이터 보호법을 실행한 지가 10 여 년이 넘었고, 서독의 경우는 연방차원에서 연방 데이터 보호위원회(Office of the Federal 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한 지도 수해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78 년 1 월 6 일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전국정보 및 자유위원회에게 공공 및 사적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감독권을 위임해 두고 있다.

영국은 1984 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데이터 관리인(Data Registrar)이 공적 부분이든 사적 부분이든 자동화된 개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이 법은 1981 년에 있었던 개인의 기록을 자동처리하는데 따른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한 유럽위원회 회의에서의 결의내용에 준해서 제정된 것이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그것이 국가횡단적으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따른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북미에서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마련하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

캐나다의 경우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볼 때 1982 년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이 통과함으로써 연방차원에서 진일보하였다. 이 법은 1977 년의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의 4 조를 크게 수정한 것이었다. 이 법을 통해 연방프라이버시위원회의 권한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위원의 권한에 상응할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1984 년에 퀘벡주에서는 정보접근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책임감독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4 년의 프라이버시 법을 근거로 한 데이터 보호체계는 지방분산화 되어 있다. 프라이버시 법의 효력에 관해 1983 년 6 월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정부정보 및 개인의 권리에 관해 하원 소위원회가 강조했던 것처럼 연방차원에서 데이터 보호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감독기구를 설립해 놓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청문회는 단지 연방단위로서 그리고 주단위로서나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예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뉴욕 주는 최근에 공공기록물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공개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로 하여금 그 법의 실시에 따른 감독과 자문을 맡도록 한 특징을 띤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0 년대 이후부터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의안제출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오고는 있지만 북미에서는 법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II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법의 대다수가 보호되어야 할 이익의 본질을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프라이버시침해우려가 현존한다는 사실은 종종 조사되고 검토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행한 연구와 데이터 보호위원회에서 주장하거나 추정한 것이다. 서유럽이나 북미에서 행해진 프라이버시에 관한 공중의 태도조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조사사례가 몇몇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도 종종 방법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결함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행해진 조사연구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5) 1978년부터 1979년 동안에 무작위로 표집한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64%가 매우 또는 다소 「오늘날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6) 이러한 수치는, 위와 비슷한 조사설문으로써 10개월 전에 해리스가 행한 여론조사7)에서 밝혀진 불안도 보다는 17%가량 증가된 것이다. 그 후 센트리 보험회사(Sentry Insurance Company)의 후원 하에 행해진 조사연구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76%가 생활 자유·행복추구권과 같은 전통적인 권리에 덧붙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19%는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프라이버시권의 어떤 측면에 관해서는 정보체계에 대해 훨씬 지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던 경영 및 정부지도자급의 응답자들에게서 불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후에 행해진 해리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79년과 1983년 사이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가 증가했음을 밝혀주고 있다.8)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와 영국과 스웨덴에서 행해진 다른 조사결과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요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9) 이들 조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점들을 보면, 우려의 정도를 응답자들이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설문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였다. 예컨대 센트리 보험회사의 조사10)는 프라이버시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뚜렷하게 밝혀놓지 않는 상황에서 또는 바른 문제를 설문하는 중간중간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설문을 끼워 넣어서 조사한다면 그와 똑같은 불안도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해리스의 조사에 비해 센트리 조사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가 17%나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결점으로 인한 결과로 돌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지적을 하나 든다면, 이들 기존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응답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센트리 조사의 경우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침해 받은 적이 있다고 한 19%의 응답자들이 경험한 침해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를(이것은 침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과는 다르다) 조사하지 않았고 또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지 않았던 것이다.11)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사대상자들이 그것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만약 일반 공중이 개인정보시스템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위험요소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를 깊이 있게 조사하기에 앞서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를, 다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묻는 틈틈이 우선 측정했다. 우리들은 조사대상자들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으며 또한 어떤 종류의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조사 후반부에 가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이전에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시스템-예를 들어 쌍방 케이블 텔레비전-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주고자 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인구학적인 속성으로 볼 때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도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온타리오주에 속한 인구가 27 만 명인 런던(London)에 위치한 가정에 거주하는 210 명의 성인 남녀였다. 남성(93 명)의 평균연령은 34 세(18 세부터 71 세까지)였으며, 여성(117 명)의 평균연령은 33 세(19 세부터 74 세까지)였다. 조사대상이 된 가정은 2 단계 군집표집방법(two-stage 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한다는 계획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조사원은 4 명의 여성으로서 그들은 각각 1982 년 11 월 16 일부터 12 월 4 일에 걸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을 전후로 해서 볼 때 뉴스를 통해 프라이버시 문제가 보도된 적은 없었다. 각 조사대상자들과의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32 분에서 87 분까지였으며, 평균소요시간은 57 분이였다.¹²⁾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케이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현대 테크놀로지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므로 이 설문지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다. 설문지 중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회 · 경제적인 이슈」 7 개와 다른 이슈 7 개를 제시해 놓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이들 이슈를 제시한 리스트의 각각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내용을 1 개 항목씩 포함시켰다. 다른 이슈들은 현재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루고 있다는 이유에서 선정된 것이었다. 그런 후에 설문지를 통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와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설문지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는 쌍방 케이블 텔레비전의 이점과 이 텔레비전이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다. 그런 후에 이들 케이블시설과 이들에 대한 규제를 보는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책보기 50 <표 1>)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표 1>은 다른 이슈와 비교해 봤을 때 개인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과 「중요하다」는 응답을 묶어서 보는 것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유용할 것으로 본다. <표 1>에 따르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는 프라이버시문제가 인플레이션, 실업문제, 범죄, 노동쟁의, 퀘백주와 여러 영어사용 주간의 관계개선문제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번째 리스트 즉 권리문제를 묶은 리스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현의 자유보다는 약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약해 본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특히 다른 이슈들과의 상대적인 인식도를 본 것이었고 또 본 조사의 주목적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라는 점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책보기 51 <표 2>) 프라이버시 침해형태로 본 심각성 인식도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형의 개인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15 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프라이버시침해라고 생각하는 침해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표 2>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경찰당국에서 전화통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침해 내지는 심각하다고 답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침해유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침해내용은 개인진료기록의 공개(69%)였고, 그 다음으로는 민원서신의 공개(62%)로 나타났다. 잡지구독자의 명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문제(58%)를, 근무자의 업무활동을 TV 를 통해 감시하는 문제(53%) 혹은 정부가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해 두는 문제(52%)보다 더 심각한 침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순서는, 각 업소들 간에 고객의 신용거래내용을 제공하는 문제, 케이블 TV 의 프로그램시청에 대한 조사, 전화를 통한 판촉활동, 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잡지회사가 구독자카드를 넘기는 문제와 전화로 판촉하는 문제를 의외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조사대상자들이 아마도 그것을 귀찮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로 보여진다. 조사결과와 인터뷰과정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공중은 그러한 침해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다음에서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9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를 제시한 뒤에 이들 하나하나를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개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이용했을 때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책보기 52 <표 3>)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른 민감도

<표 3>을 보면 은행예금잔고와 가정출입시간에 관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 화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개인진료 카드와 신용거래기록도 특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가정과 직장에 침투되어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든 부주의하게든 또는 불법적으로든 공개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유형에 속한다.

의료기록이나 재정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서 이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개인이나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취급하고 또 본래의 목적에만 한해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알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는지의 여부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몇몇 문항을 통해 조사했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신뢰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9%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62%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 개인회사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낮았다.

다른 일련의 설문을 통해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기관의 유형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업과 정부기관의 목록을 제시한 다음에 「그들 각각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정보를 이용하리라고 신뢰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50%가 마스터 카드(Mastercard), 비자(Visa)와 같은 크레디트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이들 회사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곳은 자동차보험회사로서 응답자들의 47%가 그 회사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수 민족들은 대다수 다른 기관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신전화국이 33%, 연방정부가 34%, 주정부가 33%, 지방경찰이 25%, 건강보험회사가 27%, 캐나다국세청이 31%, 그리고 은행 및 신용조합을 불신하는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95%는 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 그 다음에 온타리오 주 병원보험프로그램(Ontario provincial Insurance Program)이 88%로서 두 번째로 신뢰도가 높았다. 이러한 후자의 신뢰도는, 온타리오 주정부 건강비밀조사위원회가 1979 년과 1980 년 사이에 약물남용기록을 공표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겠다.

다른 문항에서는 많은 개인이나 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조사대상자의 68%가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보다 「다소 많이」 혹은 「훨씬 많이」 수집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기관은 고용주(63%), 크레디트카드會社(61%), 은행(58%), 왕립기마경찰(57%), 후생복지국(49%), 지방경찰(48%), 국세청(46%), 캐나다통계국(44%), 전신전화국(40%), 의사(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기관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사기관이든 정부기관이든 수집한 정보를 수집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을 통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안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문항의 내용은 「10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캐나다인들은 다소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보는가」였다. 응답자의 21%는 과거에 비해 「훨씬」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답했으며,

47%는 「다소 적은」 것으로 답했으며, 22%는 과거와 「똑같은」 것으로 답한 반면, 8%는 과거에 비해 「더」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으로 2%는 「훨씬 더」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 문항에서는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는 점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18%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44%는 「다소 불안하다」는 것으로, 12%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두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공중의 불안도는 앞에서 본 다른 사회·경제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평가한 프라이버시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일치하고 있다.

V

다음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과거 10년 동안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관과 그 퍼센티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이 10%, 정부기관이 5%, 고용주가 7%, 은행·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회사가 12%, 백화점과 같은 업소가 3%, 보험회사가 1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는 적어도 한번은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두 번 또는 그 이상씩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이 후자의 퍼센티지는 센트리조사 13)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9%만이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피해자로 생각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놀라운 수치이다. 우리가 「심각한」 침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침해사실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정도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침해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자들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답해 줄 것을 청했다. 당연히도 일부 응답자들은 그것이 사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약간의 피상적인 내용만을 답할 뿐이었다. 그 중 몇몇 사례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침해였는지 또는 심각한 침해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자면 여러 명의 응답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불러 세워놓고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은 부당한 프라이버시침해일 수도 있지만 혹은 적법한 경찰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다른 기관에 관한 사례도 역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후생복지기관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용자신청을 했을 때 은행 측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왔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상세한 내용을 결한 것이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프라이버시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몇몇 응답자들은 이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있는 사례를 알려주고 있었다. 예컨대 어떤 부인은 자기 부부에 관한 정보를 은행측이 토론토에 있는 모 회사측에 유출함으로써 「주식을 구입하라는 귀찮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 한 사람은 「생명보험을 계약하려고 신청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 측은 병원에서 진찰카드를 입수해 간 후에 보험계약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왜 기피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대부분은, 오늘날 프라이버시가 과거에 비해 없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인 이슈 중에서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이슈로 평가한 사람들이었으며,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정부나 기업을 덜 신뢰하는 응답자들이었다. 말하자면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달리 말한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프라이버시침해로 인식하고, 정의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조사결과로 보서는 기존의 조사보고서들이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센트리 조사연구(Sentry Survey)에서는 도청이 그렇게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 10명 중 1명은 한번씩은 도청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는 하나 실제 프라이버시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실제 프라이버시침해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많은 응답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는 다른 조사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VI

인터뷰 마지막에 가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전파기술의 발달에 따른 프라이버시문제를 알려주고 쌍방 케이블 TV의 장단점에 관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쌍방 케이블 TV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쌍방 케이블 TV의 이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다수가 「흥미 있다」 또는 「매우 흥미 있다」고 평했다. 그런 후에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설문제시에 앞서 「컴퓨터는 여러분이 구입하는 상품명과 구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둘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여러분이 시청하는 영화나 스포츠 종류, 시청빈도를 포함한 시청습관 전반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과반수인 57%가 케이블 TV 시청료를 50% 내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답자들의 96%는 서면동의 없이는 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대다수(91%)는 케이블 TV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집주인이라든지 고용주, 신용회사,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나 법원이 데이터 뱅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7%의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98%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사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설문을 통해서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51%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8%의 응답자는 「고객에게 광고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서비스 면에서 기술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아무 제한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 쌍방 케이블시설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저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는 88%로 나타났고,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견해는 7%, 무응답이 3%였다.

케이블 TV가 자율적으로 정보수집을 규제하게 하겠느냐 혹은 정부가 규제하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7%만이 전자를 택하겠다고 했다. 72%는 정부가 규제해야만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11%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는 응답자들이 정부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던 반면에 그들은 쌍방 케이블 TV와 관련해서는 사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해 줄 것을 역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경향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보다는 사기업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응답자들간의 태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분석을 시도하였다.¹⁴⁾

프라이버시의 어떤 측면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한 응답자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태도는 일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와 인구학적인 특성(성, 연령, 교육 정도, 수입, 직업, 결혼여부)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과는 반대로 젊은층이 훨씬 더 각종 기관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기관들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젊은층이 더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정보의 규제측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수입정도에 따른 프라이버시 관심도의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사결과는 정부 및 사기업 모두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보다는 정부차원의 규제를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다른 국가에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 국가의 시민이 경험하는 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국가가 갖는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번 조사 문항이 미국에서의 조사와 중복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사결과는 상당히 수렴하는 것이다. 미국시민 역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든 사조직이든 불신했으며, 상당히 프라이버시침해를 경험한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론조사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야만 하며 특히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근본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화횡단적 비교연구와 시차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각 국가별 차이점을 데이터 공개사건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정책의 수행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도는 잠재적인 사회 · 정치적인 문제로서 그러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히 주의를 끌만한 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정부 및 기업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인 그리고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주>

- 1) Burnham, David, The Rise of the Computer State(N.Y: Random House, 1983) ; Flaherty, David H., Privacy and Government Data Bank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Mansell,1979); Flaherty, David H.,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1984); Smith, R.S., Privacy: How to Protect What's Left of It(N.Y.: Anchor Boots, 1979); Wigand, Rolf T., Carrie Shipley, and Dwayne Shipley, "Trans border Data Flow, Informatics and National Politics", Journal of Communication 34 (1), Winter 1984, pp.153-175.
- 2) Flaherty, David H. Protecting Privacy in Two-way Electronic Services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1985); Westin, A.F., "Home Information Systems; The Privacy Debate", Datamation 28, 1982, pp.100-113.
- 3) Flaherty, David H., (1985)op. cit
- 4) Flaherty, David H(1979), op. cit; Wigand, Rolf T, Carrie Shipley, and Dwayne Shipley, op. cit.
- 5) Vidmar, Neil, "Privacy and Two-Way Cable Television; A Study of Canadian Public Opinion", Report to the Ontario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Downsview, Ontario, 1983.
- 6) Westin, A.F., op. cit
- 7) Louis Harris & Associates and A. F, Westin, The Dimensions of Privacy; A National Opinion Research Survey of Attitudes Towards Privacy(N.Y.; McBain & Small,1979) .
- 8) Southern New England Telephone, "The Road After 1984: The Impact of Technology on Society; A Study by Louis Harris and Associates, Inc." New Haven, Conn.,1984.
- 9) Vidmar, Neil, op. cit.
- 10) Westin, AF., op. cit.
- 11) Southern New England Telephone, op. cit, p. 7.
- 12)자세한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래의 책 참고 Flaherty, David H. (1985) , or. cit.; Vidmar, Neil, op. cit.
- 13) Louis Harris & Associates and A.F. Westin, op. cit

14) 지면관계상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상관관계 및 유의도를 포함한 이러한 자료분석은 Vidmar, Neil, op. cit. pp.50-55 를 참고할 것. 이에 대한 자료는 필자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것이다.